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0. 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不動産取引届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別紙第6号書式] <改正2023年10月6日> 不動産取引管理システム (rtms.molit.go.kr)
でも申請可能です。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外国人不動産等取得届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外国人不動産等継続保有届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裏面の留意事項・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시 受付日時	처리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신고인 届出人	성명(법인명) 氏名 (法人名)	외국인(법인)등록번호 外国人 (法人) 登録番号
	국적 国籍	①국적 취득일자 ①国籍取得日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生年月日 (法人設立日)	(휴대)전화번호 (携帯) 電話番号
	②주소(법인소재지) ②住所 (法人所在地) (거래지분 : 분의) (取引持分 : 分の)	
신고사항 届出事項	③취득 원인 ③取得原因	
	④상세 원인 ④詳細原因	
	⑤원인 발생일자 ⑤原因発生日	
	⑥취득 가액(원) ⑥取得価額 (ウォン)	
	⑦종류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⑦種類 []土地 []建築物 []土地及び建築物	
	[]공급계약 []전매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供給契約 []転売 []分譲権 []入居権 []竣工前 []竣工後	
	⑧소재지 ⑧所在地	
⑨토지 (지목 :) / (취득면적 : m²) / (지분 : 분의) ⑨土地 (地目 :) / (取得面積 : m²) / (持分 : 分の) (대지권비율 : 분의) (敷地権の割合 : 分の)		

	⑩건축물 (용도:)/(취득면적: m²)/(지분: 분의) ⑩建築物 (用途:) / (取得面積: m²) / (持分: 分の)
	⑪취득 용도 ⑪取得用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不動産取引届等に関する法律」第8条、同法施行令第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7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届け出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
届出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뒤쪽 참조 裏面参照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届出人が 提出する書類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不動産等取得届の場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以下の区分に基づく書類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1. 贈与の場合: 贈与契約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相続の場合: 相続人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3. 競売の場合: 競落決定書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買戻権行使の場合: 買戻し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5. 法院の確定判決の場合: 確定判決文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法人の合併である場合: 合併の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不動産等継続保有届の場合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韓国国民や韓国の法令によって設立された法人又は団体が外国人等に変更された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1. 건축물대장 1. 建築物台帳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土地登記事項証明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建物登記事項証明書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1. 届出書を提出する際は、旅券等届出人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ず、電子文書で届出を行う際は、電子認証の方法で届出人の身分を確認します。
 2.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電子文書で届出を行う際は、証明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ず、添付が困難な場合は、その写しを郵送又はFAXで届出官庁に別途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 * この場合、届出確認証は、提出された書類を確認した後遅滞なく送付しま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 ① “국적 취득일자” 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① 「国籍取得日」の欄は、土地継続保有届の場合は必ず記入します。
- ② “주소” 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② 「住所」の欄の取引持分には、共同取得した場合の所有持分を記入します。
- ③ “취득 원인” 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③ 「取得原因」の欄には、契約、契約以外、継続保有の何れかを記入します。
- ④ “상세 원인” 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④ 「詳細原因」の欄には、売買、交換、贈与、相続、競売、買戻権の行使、法院の確定判決、法人の合併、新築等、国籍変更の何れかを記入します。

-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⑥ 「原因発生日」の欄には、契約締結日、贈与決定日、相続日（被相続人の死亡日）、競落決定日、買戻契約日、確定判決日、合併日、使用承認日、国籍変更日の何れかを記入します。
- ⑦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⑧ 贈与、相続等によって取得価額の算出が困難な場合は、届出原因の発生年度の公示地価等を参考に記入し、参考にできる価格がない場合は、「取得価額」欄の作成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⑨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세무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⑩ 「種類」の欄には、土地、建築物又は土地及び建築物（複合不動産の場合）の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ます。供給契約は、施行会社又は建築主等が最初に不動産を供給（分譲）する契約であり、転売は、不動産を取得できる権利の売買を意味します。この場合は、該当する欄に「√」をつけ、細部項目の分譲権、入居権、竣工前、竣工後の該当する各欄にも「√」をつけます。
- ⑪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 ⑫ 「所在地」欄には、不動産の所在地・地番（アパート等の集合建物の場合は棟・号まで）を記入します。
- ⑬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 ⑭ 「土地」欄には、法定地目、取得面積を正確に記入し、持分又は集合建物の敷地権を取得する場合は、持分又は敷地権の割合を記入します。
- ⑮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 ⑯ 「建築物」の欄には、アパート、一戸建て等「建築法施行令」別表1に基づく用途別建築物の種類と取得面積を正確に記入し、持分を取得する場合には持分を記入します。
- ⑰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⑱ 「取得用途」欄には、住居用（アパート）、住居用（一戸建て）、住居用（その他の住宅）、レジャー用、商業用、工場用、その他の用途の何れかを記入し、取得用途が決まっていない場合は現在の用途を記入します。
-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 不動産、関係筆地等が多数の場合は、別の用紙に記載し割印を押してから添付します。

